



배포 일시	2023. 3. 14.(화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흥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 김병철 (044-201-352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원희룡 장관 ‘태업 계속되면 운행’특장기 설치 및 대체인력 투입

- 국토부, 700개 현장에 대한 불법·부당행위 특별점검 3월 31일까지 실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, 이하 국토부)는 3월 14일(화) 오후 1시 30분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(국토부, 경찰청, 고용부, 지자체)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.
  -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,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,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,
  - 특히,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.
  - 또한,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.
-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,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,

< 불성실 업무 유형(15개) 중 주요내용 >

- 일반사항(1개):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 지연 등 차질이 발생
- 근무태도(4개):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
- 금지행위(2개):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
- 작업거부 등(5개):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

○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.

○ 이와 함께,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도 구축하여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\* 건설현장 근로를 희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 보유자로 대한건설협회 누리집 ([www.cak.or.kr](http://www.cak.or.kr))에 접속,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또는 팩스(02-547-0403)로 제출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·부당 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,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” 고 지적하면서,

○ “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 “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,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” 고 언급하며,

○ “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,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” 고 말했다.

